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기술안보원 설립근거 마련〉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61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기술안보원의 설치 등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이하 “기술안보원”)을 설립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심의 지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안보원의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또한, 기술안보원이 아닌 자가 국가기술안보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7조의2(국가기술안보원의 설치 등)</u> <u>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이하 “기술안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기술안보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기술안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u>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안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중합계획의 수립의 지원

3.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 제정 및 수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심의에 관한 지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등 심의에 관한 지원

6.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등 심의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안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안보원이 아닌 자는 국가기술안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기술안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u><신 설></u> 1. ~ 3. (생략) ② (생략)	<u>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안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u> 제39조(과태료) ① ----- -----. 1.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국가기 <u>술안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음.¹⁾

1)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 ④ (생략)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평가 요구 증대와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기술수출 등의 증가로 인해 현행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체제로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신속히 평가하고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술안보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다만,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42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2024.12.27.)에서 통과되어 2025년 7월에 시행될 예정으로²⁾, “기술안보센터”는 개정안의 “기술안보원”과 기능이 유사함.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64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술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일부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R&D PD(Program Director)들의 참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므로, 개정안의 “기술안보원” 설립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국가정보원³⁾은 개정안의 “기술안보원”의 업무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및 시행예정인 “기술안보센터”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추가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⁴⁾ 또한 역할 중복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1

3) 현재, 국가정보원의 차장은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의 장이 지명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4)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